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신현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720 발의연월일: 2022. 10. 4.

발 의 자:신현영·강민정·김병기

김승원 · 김주영 · 김회재

박재호 · 신정훈 · 위성곤

유정주 • 윤재갑 • 이상헌

이용빈 · 이용선 · 이용우

이해식 · 임호선 · 정일영

조승래 · 주철현 · 허종식

황운하 의원(2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발생한 '수원 세 모녀 사건'의 경우,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인해 공무원이 현장조사차 주소지를 방문했으나, 이들의 주소지와 실 제 거주지가 달랐고 연락처도 파악되지 않았음. 이후 세 모녀는 연락 두절로 기록되며 이들에게 어떤 도움도 제공되지 않았음. 건보료 체납 등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있다는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음에도 소재 지 파악 및 연락이 되지 않아 복지 비대상자로 분류됨.

이에 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 및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

려는 것임(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발굴"을 "발굴(지원대상자의소재 파악을 포함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친족의 전화번호는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할 수 없거나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만으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제11조(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) | 제11조(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) |
| ① 보장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 | ① |
| 에 거주하는 지원대상자를 <u>발</u> | <u>발</u> |
| <u>굴</u>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| 굴(지원대상자의 소재 파악을 |
| 해당하는 관계 기관・법인・단 | <u> 포함한다)</u> |
| 체·시설의 장에게 소관 업무 | |
| 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 | |
| 보의 공유, 지원대상자의 거주 | |
| 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 | |
| 의 동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 | |
| 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| |
| 경우 관계 기관・법인・단체・ | <u>.</u> |
| 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 | |
|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| |
| | |
| 1. ~ 8. (생 략) | 1. ~ 8. (현행과 같음) |
| 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③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 |
| | 자의 소재 파악이 필요한 경우 |
| |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 |
| | 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|
| |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의 전화 |
| | 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|

<신 설>

다만, 친족의 전화번호는 지원
대상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할
수 없거나 지원대상자의 전화
번호만으로 소재 파악이 어려
운 경우에 요청할 수 있다.
④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
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
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